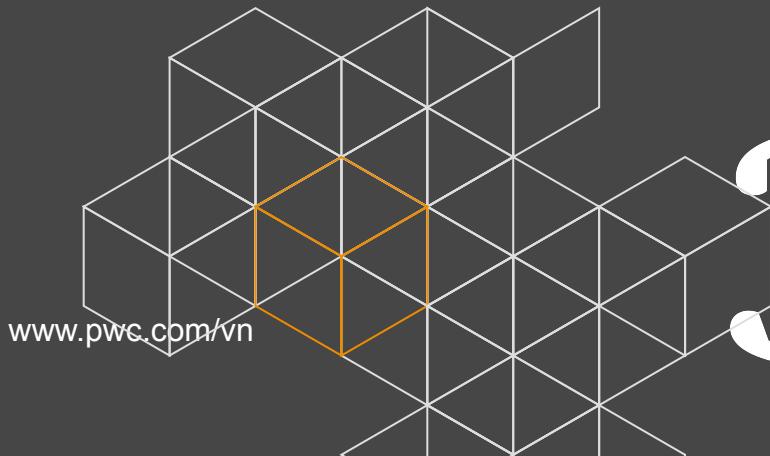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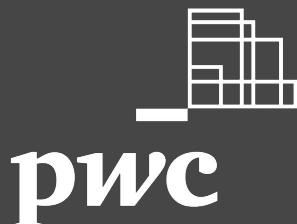




PwC 베트남 뉴스레터

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
기술적 자재명세서(BOM)



www.pwc.com/vn

30
years
in Vietnam

At a glance..

기업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, 실제 자재명세서 (Bill of Materials, “BOM”) 및 손실률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기술적 자재명세서 및 손실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

내용

물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
산업무역부의 시행규칙
05/2018/TT-BCT에 따라 원산지
증명서를 신청하는 기업은
수출물품이 원산지 규정을
충족함을 신고 및 보장해야 하며,
손실률을 포함한 완제품의
자재명세서(BOM)를 신고해야
합니다.

그러나 동 시행규칙은 신고해야
하는 자재명세서(BOM) 및
손실률이 실제인지 기술적인지
명시하지 않습니다. 일반적으로
기술적 자재명세서(BOM)는
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
자재/소모품 수량을 미리 결정해둔
것입니다.

2023년 8월 25일, 산업무역부
산하 수출입국에서
원산지설명표의 자재명세서(BOM)
및 손실률 신고에 대한 지침을
제공하는 공문 708/XNK-XXHH을
발행했습니다.

공문 708에 따르면 수출물품의
원산지증명서 신청 시, 실제
자재명세서(BOM) 및 손실률을 알
수 없는 경우 기업은 기술적
자재명세서(BOM) 및 손실률을
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업은
데이터가 정확하게 신고되고
적절한 문서에 의해 뒷받침되며
수출물품이 해당 원산지 규정을
충족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합니다.

또한, 공문 708은 원산지증명서가
발급된 후 관할당국이 수출물품의
원산지에 대한 검사 또는 검증을
수행하는 경우 기업은 실제
자재명세서(BOM) 및 손실률로
인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
수출물품의 원산지가 변경되지
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
강조합니다.

Contact us

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Richard Irwin
Partner
r.j.irwin@pwc.co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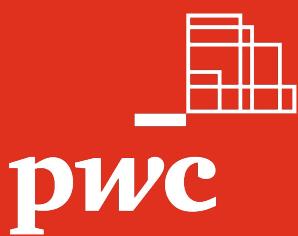
박준형 – 호치민 사무실
Senior Manager, Korean CPA
+84 (28) 3823 0796 Ext. 4611
park.junhyung@pwc.com



Nguyen Huong Giang
Partner
n.huong.giang@pwc.com



우정균 – 하노이 사무실
Senior Manager, Korean CPA
+84 (24) 3946 2246 Ext. 1011
jung.kyun.woo@pwc.com



www.pwc.com/vn

